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0
----------	-----

2018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찬성자 9명)

나. 발의일자 : 2018년 8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라. 상정결과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9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 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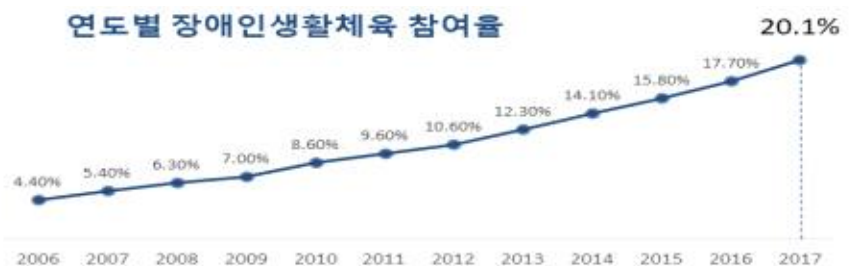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신 설>	4. “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5. “장애인체육가맹단체”란 장애인 체육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	6.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장애인으로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신 설>	7.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 전체 장애 인구 251만 중 15.6%인 39만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인구에 약 4% 이상을 차지함.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06년 4.4%에서 2017년 기준 20.1%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7년 기준 59.2%)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18.8)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2년에 30%까지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함.



출처: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유형별 현황〉

시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합계	2,511,051	1,267,174	252,794	271,843	19,409	195,283	250,456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서울	391,027	189,777	42,203	41,887	3,097	25,215	42,212	5,043	16,139	15,424	1,205	2,157	2,236	408	2,760	1,264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참여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며,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장애인 체육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는 생활체육을 통해 발굴되고 있어 패럴림픽 등 주요 국제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14개¹⁾의 자치구 장애인체육회가 지부로 활동하고 있고 볼링 협회, 배드민턴협회, 탁구협회 등 총 37개의 가맹단체가 있으며,

동 조례안에서 신설된 안제4조제7호의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지도·지원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지원에 대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 흐름에 맞는 조치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거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1) 노원, 은평, 영등포, 종로, 성북, 양천, 강동, 송파, 강북, 강서, 성동, 관악구, 서대문, 마포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현황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현황

연번	자치구명	창립일	승인일	회장명	비고 (지부신청일)
1	강동구장애인체육회	2013.10.19.	2013.12.27.	이정훈	2013.12.03.
2	강북구장애인체육회	2015.10.20.	2016.02.24.	박겸수	2015.11.11.
3	강서구장애인체육회	2015.11.17.	2016.02.24.	노현송	2015.12.10.
4	관악구장애인체육회	2016.09.20.	2016.11.29.	박준희	2016.10.19.
5	노원구장애인체육회	2009.12.23.	2010.01.19.	오승록	2010.01.19.
6	마포구장애인체육회	2017.11.30.	2018.02.20.	유동균	2017.11.30.
7	성동구장애인체육회	2015.12.24.	2016.02.24.	정원오	2016.01.11.
8	성북구장애인체육회	2013.09.12.	2013.11.19.	이승로	2013.09.24.
9	송파구장애인체육회	2013.11.20.	2013.12.27.	박성수	2013.11.27.
10	양천구장애인체육회	2013.10.21.	2013.11.19.	김수영	2013.11.10.
11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2013.06.28.	2013.08.20.	채현일	2013.07.04.
12	종로구장애인체육회	2013.09.09.	2013.11.19.	김영종	2013.09.10.
13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2016.10.25.	2016.11.29.	문석진	2016.11.03.
14	은평구장애인체육회	2013.02.01.	2013.02.05.	김미경	2013.02.04.

<붙임2>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가맹단체 현황

□ 장애인체육가맹단체 현황

연번	분류	단체명	대표자명	소속 및 직책	가맹승인일
1	정가맹	론볼연맹	정재훈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이사	2008.01.18
2	정가맹	볼링협회	김철기	아이보트여행사 대표	2008.01.18
3	정가맹	댄스스포츠연맹	강승자	한국댄스스포츠코치협회 회장	2008.01.18
4	정가맹	배드민턴협회	박형권	박형권한의원 원장	2008.01.18
5	정가맹	탁구협회	손해복	장수한의원 원장	2008.01.18
6	정가맹	력비협회	구교만	백석대학교 교수	2008.01.18
7	정가맹	테니스협회	이상화	노바코리아 대표	2008.01.18
8	정가맹	농구협회	허원희	(주)일래브 이사	2012.05.09
9	정가맹	수영연맹	우순옥	해피투게더자립장 대표	2008.01.18
10	정가맹	아이스하키협회	김용식	자영업	2008.01.18
11	정가맹	사격연맹	이해성	조영오토모티브 부장	2008.01.18
12	정가맹	양궁협회	정미자	前 대한양궁협회상별위원 / 양궁국제심판	2008.01.18
13	정가맹	역도연맹	이성민	前 중량구의회 의장, 現 중량문화원 이사	2008.01.18
14	정가맹	축구협회	김길홍	前 전국풋살연합회 심판위원장	2010.07.06
15	정가맹	펜싱협회	진형식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08.01.18
16	정가맹	골볼협회	윤상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상임이사	2011.01.26
17	정가맹	스키협회	김충식	OK택시(주) 대표이사	2008.01.18
18	정가맹	육상연맹	고봉현	서울삼성학교 체육부장교사	2008.06.26
19	정가맹	조정연맹	박태봉	(주)강성이앤씨 대표이사	2009.01.29
20	정가맹	보치아연맹	정필경	오택캐리어 부사장	2008.01.18
21	정가맹	골프협회	김운숙	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2008.01.18
22	정가맹	사이클연맹	나은화	사랑나눔 위캔 사무총장	2010.01.19
23	정가맹	배구협회	정인준	자영업	2008.06.26
24	정가맹	컬링협회	홍이석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회장	2008.06.26
25	정가맹	당구협회	김한배	한국장애인연맹 총괄운영본부장	2010.07.06
26	정가맹	태권도협회	박성철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2010.07.06
27	준가맹	수상스키협회	이기수	트라스포기획 대표	2008.01.18
28	준가맹	게이트볼연맹	박동근	(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감사	2013.02.05
29	준가맹	유도협회	선우 경	(주)태흥비엠앤에스 대표이사	2016.02.26
30	준가맹	농아인체육연맹	문병길	서울특별시농아인체육연맹 회장	2016.02.26
31	준가맹	시각스포츠연맹	남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장	2011.01.26
32	인정단체	승마협회	조용찬	흙마축산 대표	2012.05.09
33	인정단체	요트연맹	김동식	치과의사	2008.06.26
34	인정단체	e스포츠연맹	유영호	강북구장애인연합회 회장	2012.05.09
35	인정단체	검도협회	김배근	(주)대원에이앤아이 대표	2015.04.30
36	인정단체	다트연맹	곽병준	장녹회 환경복지 재활원장	2017.02.22
37	인정단체	소프트볼야구협회	양승식	테라웍스 대표이사	2018.02.20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창원, 최영주, 안광석, 김춘례,
박기재, 노승재, 황규복, 문병훈,
김인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 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대상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가맹단체”란 장애인 체육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장애인으로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안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u></p> <p><u>5.“장애인체육가맹단체”란 장애인 체육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고 서울특별시장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u>6.“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장애인으로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u></p>
<p>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사업추진)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u></p>
<p>7. (생략)</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